

## 2014년도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내 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 직접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공고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4년도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내 「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직접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6일  
중 소 기 업 청 장

### 1. 사업개요

- 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 직접사업화 지원 사업(직접사업화 과제)
  - 대학·연구기관과 대·중소기업간 공동투자를 통한 기술사업화 추진
    - 선도기업의 선순환 투자를 기반으로 설립초기부터 중소기업(신규법인)에 맞춤형 R&D지원\* 체계 구축
  - 사업화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신규법인 설립
    - 대학·연구기관은 신규법인에 보유기술(현물) 등을 출자
    - 투자기업은 신규법인에 현금출자 및 제품의 판로연계 지원
  - 자금은 담보와 이자 없이 지원하고 개발이 완료되면 지원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술료로 회수
  
-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50억원

## 2. 지원 대상과제

### □ 사업개요

- 대기업 등의 수요와 연계하여 사업화 가능한 유망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이 대기업 등과 공동으로 법인창업을 통한 사업화를 추진
  - \* “대기업 등”이란 대기업, 중견기업 등 400억원 이상 매출액을 보유한 기업
  - “대학·연구기관-대기업 등”이 공동 출자하여 직접사업화 법인을 창업
  - 대학·연구기관은 창업법인에 현금물(보유기술 등) 등을 출자
  - 대기업 등은 창업법인에 현금 출자 및 개발제품의 판로 연계 등
  - \* 단,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창업법인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

※ 협력펀드 조성 참여 투자기업 현황('13년말 기준으로 추가될 수 있음)

- 민간부문(13개) : 포스코, 인켈,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LS엠트론,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중공업, 삼성SDI, 대우조선해양, 현대홈쇼핑, 삼성전자, 한솔테크닉스, SK텔레콤
- 중견기업(11개) : 주성엔지니어링, 다산네트웍스, 인성정보, 파워로직스, 루멘스, 미래나노텍, 케이엠더블유, 크루셀텍, 한국델파이, 오텍캐리어, 대교
- 공공부문(14개)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 3. 지원내용

### □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필요한 자금
  -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지원규모 및 조건

○ 공통사항

- 총 개발비의 100%이내, 최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신규설립법인의 부담금은 없음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지원과제 유형	개발기간	지원금 <sup>1)</sup>	지원금비중	지원방법	정부출연금
직접사업화과제	최대 2년	10억원 이내	총 개발비의 100%이내	자유응모	50억원

\* 지원금 비중이 정부(50%)+투자기업(50%)이나 투자기업이 중견기업이하인 경우 정부(80%)+투자기업(40%)

**4. 신청자격**

□ 기술공모 및 투자희망기술 신청자격

<사업화 유망기술 공모>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의 공공연구기관\*, 제10항의 공공연구첨단기술지주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6항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공공연구기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사업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투자희망기업>

- 대기업, 중견기업, 유망중소기업(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400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벤처캐피탈·엔젤투자(기업과 컨소시엄 구성해야함) 등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현장조사)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에 근거한 현장 확인(관리기관)
- (대면평가)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서면검토 및 질의 등(전문기관)
- \*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설립년월일(창업)	▪ 사업자 등록증
상시 근로자 수	▪ 채용예정 계획서
자본관계 확인	▪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R&D 투자비율	▪ 투자기업의 투자확약서
기본 신청자격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 <a href="http://rndgate.ntis.go.kr">rndgate.ntis.go.kr</a> ) 조회 등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정 제외

- ※ 지원 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4년 사업공고 이후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접수방법

www.smtech.go.kr → 회원가입(대표자, 참여연구원, 기업정보) → 대표자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 기술신청 및 투자요청시 신청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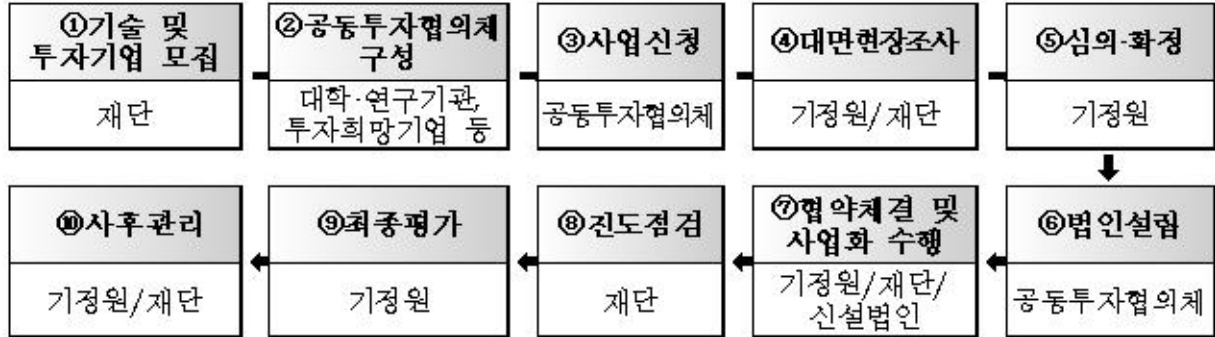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연구기관 및 투자희망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별지 서식 중 “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특허) 직접사업화 기술제안서”, “투자희망기업 직접사업화 투자기술 요청서”를 신청기간 내에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제출

###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 식 명	비 고
①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	공 통
②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공 통
③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공 통
④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 당 시
⑤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 당 시
⑥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 당 시
⑦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해 당 시

※ 제출서류 서식 및 작성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알림마당(사업공고)의 공고 게시물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고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은 자료마당(사업규정자료)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기타 증빙서류는 현장조사 시 확인)

□ 과제 추진 절차



\* (약어)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정원

○ 신청 과제 선정평가 및 최종 확정

- 신청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리기관의 현장조사, 전문기관의 대면평가 등 2단계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 과제 선정

구 분	평가기관	평가자 및 평가내용
현장조사	관리기관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참여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중복성, 사업비계상 등의 조사
대면평가	전문기관	기술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유사 중복성, 기술성, 시장성, 사업비 적정 등을 평가

- 평가절차를 거쳐 추천된 과제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신규 지원 과제 및 금액을 최종 심의·확정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우대배점 - 감점

\*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 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 7.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전략분야·전략품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 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투자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㉓ 기업의 부도, 휴·폐업

㉔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㉕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100%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8. 기타 공지사항**

①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2014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

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과제명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수요조사과제
		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 연계과제 (글로벌협력과제)
		해외수요처 연계과제 (기업제안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수요조사과제
		미래전략과제
		기업제안과제
		직접사업화과제

\* 세부과제명은 사업별 공고에 따라 추가 될수 있으며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모집공고 별로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하여 탈락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재신청 할 수 없음



②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R&D 기획역량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③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

<적용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신청 불가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산학연사업에 해당)의 자격으로 선정되어,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까지,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과제를 수행한 경우 사업에 참여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붙임) 참조

○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에 참여 불가



○ 그외 적용기준

- 제품·공정개선사업은 '저변확대'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없이 참여 가능(단, '저변확대' 사업 총 3회 협약기업의 경우 참여 불가)

- '05년부터 '저변확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④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RFP로 공고되는 지정공모형 과제는 RFP(요약 등)를 인터넷에 공시
  - 수요조사과제는 RFP(요약 등), 미래전략과제는 과제명 등 사업개요, 기업제안과제는 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을 인터넷에 공시하여 기개발/기지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⑤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⑥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4년도 운영요령 및 각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을 적용함

- \* 「14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및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서 추후 공지 및 다운로드 가능

## 9. 문의 및 확인

### □ 투자기업

투 자 기 업 명		전 화	문의사항
민간부문 (24)	포스코	02-3457-1447	과제 발굴 및 제안, 중소기업 추천 등
	인켈	032-650-6061	
	삼성전기	031-218-2210	
	삼성디스플레이	041-535-9031	
	LS엠트론	063-279-5143	
	한국항공우주산업	055-851-1248	
	현대중공업	052-203-6027	
	삼성SDI	070-7125-1422	
	대우조선해양	02-2129-0292	
	주성엔지니어링	031-760-7226	
	인성정보	02-3400-7143	
	다산네트웍스	070-7010-1414	
	루멘스	031-218-1220	
	미래나노텍	043-710-1229	
	파워로직스	043-219-5687	
	케이엠더블유	031-370-8656	
	크루셀텍	031-370-8656	
	현대홈쇼핑	02-2143-2043	
	대교	02-829-0760	
	한국델파이	053-610-1714	
	오텍캐리어	02-6965-1524	
	한솔테크닉스	043-530-8868	
	삼성전자	02-2255-7826	
	SK텔레콤	02-6100-4557	

### □ 사업총괄 및 관리기관, 전문기관

담당기관 (담당부서)		전 화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1661-1357	시행계획
관리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지원부)	02-368-8710	지정과제 공고,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042-388-0219	
	중소기업R&D콜센터	1661-1357	온라인 신청 및 시스템

□ 인터넷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tech.go.kr](http://www.smttech.go.kr))
- 중소기업청([www.smba.go.kr](http://www.smba.go.kr))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연도	“저변확대” 사업명	“선택집중” 사업명
200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환경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2006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200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컨소시엄기술개발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2008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2009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평가연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연도	“저변확대” 사업명	“선택집중” 사업명
2010	<p>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창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유망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p>	<p>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투자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연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지정공모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p>
2011	<p>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혁신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p>	<p>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amp;D기획지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농공상융합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글로벌협력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학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학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p>

연도	“저변확대” 사업명	“선택집중” 사업명
2012	<p>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서비스연구개발과제)</p> <p>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p> <p>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기업제안과제))</p> <p>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기업제안과제)</p> <p>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해외기술이전과제)</p> <p>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p> <p>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p> <p>융복합기술개발사업(농공상융합형과제)</p> <p>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p> <p>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p> <p>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p> <p>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재도약과제)</p> <p>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건강관리과제)</p> <p>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앱과제)</p> <p>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1인창조기업과제)</p> <p>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투자연계멘토링과제)</p> <p>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과제)</p>	<p>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장소기업육성과제)</p> <p>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p> <p>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p> <p>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amp;D기획지원연계과제)</p> <p>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p> <p>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해외수요처(글로벌협력과제))</p> <p>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산연협력과제)</p> <p>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출연연과제)</p> <p>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p> <p>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라이드)</p> <p>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p> <p>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p> <p>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p> <p>융복합기술개발사업(센터연계형과제)</p> <p>융복합기술개발사업(사업화연계과제)</p> <p>융복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p> <p>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p> <p>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p> <p>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p> <p>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p>
2013	<p>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p> <p>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p>	<p>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p> <p>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p> <p>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p>

※ '13년부터는 기술개발 지원사업 “선택집중”, “저변확대” 사업구분 적용